

인터뷰를 하면서 행해진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진술

쾰른 고등법원 1982 년 7 월 14 일 결정

6W 78/82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13 조 및 제 3 조

<판결요지>

1. 상인이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상인은 그 기사가 발행되기 전에 게재될 기사가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위 인터뷰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 어떠한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외부적인 사장이 존재하는 때에는, 상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위 이의에 답변하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사실개요>

이 사건 법적 분쟁의 발단은 피신청인이 한 인터뷰이었던 바, 위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주장이 행해졌다. 위 당사자사이에서는 단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된 것으로 선언된 중요쟁점에 관한 비용의 부담이 문제로 되었다.

<결정이유>

1982 년 3 월 23 일자 화해에 의해서 중요한 쟁점이 해결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비용은 신청된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쌍방 당사자들이 일치해서 이 사건분쟁이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 해결된 것으로 선언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13 조 및 제 3 조에 기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0 년 동안 성공적으로 결혼중개사업을 해왔다는 주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은 그에게 책임있는 사정으로 인해서 X 주간지의 1982 년 2 월 4 일자 판의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기사에서, 피고가 사실은 1977 년 10 월 이후부터 위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 년 동안 성공적으로 결혼중개사업을 해온 것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X」 주간지의 편집자와 인터뷰를 한 것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이 「X」 주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그의 영업활동에 관한 위 잡지에 실린 기사가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피신청인은 그의 인터뷰의 결과로서 그의 영업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었다. 인터뷰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다.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혹시 발생할지 또 모르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 인터뷰에 기한 기사를 사전에 미리 보도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해는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해준 상인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그의 영업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그 광고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 1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나아가서 본건 절차의 내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었음에도 그의 인터뷰의 경과에 대한 사정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위 이의에 답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사건 가처분의 명령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의를 한 자에게 이의를 당한 자의 행동이 공정한 거래에 반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그 이의에 대답하여 주고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줄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Pastor, Der Wettbewerb sprozeß, 3. Aufl. 93 면 이하 참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독일민사소송법 제 91 조의 a 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die Entscheidung des Senats in WRP 1979, 392 und 816 Sowie die Entscheidung des Senats vom 10.5.1982-6W20/82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소송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신청인의 불복액수에 상응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